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50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전용기 · 윤준병 · 이성운
허성무 · 유동수 · 박홍근
민병덕 · 권칠승 · 전진숙
김남희 · 이연희 · 조정식
박해철 · 박 정 · 송옥주
강준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21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인공지능 생성자료”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로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 납본 시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인공지능 생성자료”란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로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u>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u>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u>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 <u>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u> ----- ----- -----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④ (생략) 제55조(과태료) <u><신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u>제21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 납본 시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①·② (생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 -----.